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HDC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HDC 뉴패러다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HDC 뉴패러다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HDC 뉴패러다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HDC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집합투자업자·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4. 작성기준일: **2018년 1월 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년 1월 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모집(매출) 총액: 1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02-3215-3000),  
판매회사 및 협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 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자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목차

###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붙임] 용어풀이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18.01.02)

## HDC 뉴패러다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펀드코드: BN084]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b>HDC 뉴패러다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b>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b>HDC자산운용(주)</b> 는 이 투자신탁의 <b>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b> 등을 감안하여 <b>5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li> </ul>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HDC자산운용주식회사 (☎ 02-3215-30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효력발생일	2018년 1월 8일	존속 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구분	지급비율(연간, 순자산총액의 %)	
	Class C	Class C-I
보수 (연,%)	운용	0.400
	판매	0.965
	신탁업자	0.020
	일반사무관리	0.015
	기타비용	0.006
	총보수비용	1.406
		0.471

※ 주식사항	※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 주1) 보수 지급시기: 매3개월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사유발생시 부과됩니다. 주3)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매입 방법	(가) 오후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방법	(가) 오후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참조
기준가	①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②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dcasset.com">www.hdcasset.com</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http://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 가. 투자전략

##### ▶ 자산배분전략

- 채권 60% 이상 + 주식 30% 이하
- 주식부문은 펀드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시장상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입 비중 조정

##### ▶ 주식운용전략

- 성장 Paradigm을 중시한 가치주 분석으로 안정적 초과 수익 달성

##### <전략>

- 최근의 시대 환경은 새로운 필요(Needs)를 통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과정의 연속임
- 따라서 신사고와 신경계 패러다임에 초점을 둔 새로운 투자전략은 초과수익의 기회를 제공
- 현재 시장의 지배적 뉴패러다임에 속하는 4차산업혁명, 고령화, 글로벌화 등의 수혜 예상 기업군 집중 투자로 초과 수익 목표

##### <투자대상 분석 방식>

- Top-down(성장패러다임 포착 -> 뉴스,회의,filing) + Bottom-up(HDC Scoring System ->정량적,저평가 분석)
- + 차별적 운용(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된 분석)

##### <투자 유망 섹터>

-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 OLED, 전기차, 5G,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 고령화 : 건강, 레저, 1인가구, 자동화, 생명공학, 바이오, 도우미로봇, 게임, 소비, 편의점, 놀이문화
- 글로벌화 : 반도체, OLED,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게임

##### <매매원칙>

- 성장 패러다임에 적합한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종목 위주 발굴, 편입
- 뉴패러다임의 추가 반영도를 고려하여 경쟁 Peer 기업대비 저평가시 보유, 고평가시 분할 매도
- 패러다임 소멸 및 밸류에이션(Per) 초과 기업에 대해 적극적 매도

##### <기타(+a 수익)>

- 공모주, 블록딜, 실권주 등 이벤트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분석, 편입하여 +a 수익률 제고

##### ▶ 채권운용전략

- 듀레이션 2년 이하의 안정적 성과목표 (신용등급 AA-이상)
- 듀레이션 전략: 대내외 펀더멘털 분석, 통화정책 및 수급 전망, 중기적 관점 접근
- 수익률 곡선 전략: 기준금리 대비 금리차이분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만기 비중 확대전략
- 밸류에이션: 신용등급 상향 종목 예측,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매수와 고평가된 종목 매도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3.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팀운용, 2018.1.2.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지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홍호덕 (책임)	1964년	주식운용 본부장 (전무)	35개	4,782억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 '96.06.~'03.04.한일투신 주식운용팀 - '04.11.~'11.03.HDC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11.03.~'12.12.컴퍼스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 - '13.01.~현재 HDC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서용진 (부책임)	1963년	채권운용 본부장	321개	30,695억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91.05.~'97.01. 동부증권 인수공모부 - '97.01.~'05.08. 동부자산운용 채권운용 - '06.01.~ 현재 HDC자산운용 채권운용
이건민 (부책임)	1979년	주식운용 2팀장	35개	4,782억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 - 13.09.~현재 HDC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10.09~13.08 AK투자자문 주식운용팀 - 06.03~10.09 동부증권 선물운용팀, 주식운용팀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지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지구 및 일일 운용규모(2018.1.2.기준) : 12개/ 2,484억 (주식운용), 4개/600억 (채권운용)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주식운용본부장)·부책임운용전문인력(채권운용본부장, 주식운용2팀장)입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지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임의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액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지구에 관한 사항의 10. 집합투자지구의 투자위험)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집합투자업자는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지구는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주식, 60%이상을 채권에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지구로서 6등급 중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위험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낮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집합투자지구는 채권의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주식에의 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로서 채권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을 인지하고 주식의 가치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

품입니다.

※ 최초 설정일로부터 3년 경과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 재산정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집합투자업자 HDC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위험 관리

- 시장리스크 발생 시 대내외 환경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에 대응합니다.
-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

주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정기보고서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hdcasset.com)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 <a href="http://www.hdcasset.com">www.hdcasset.com</a>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HDC 뉴패러다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BN084)	
종류(Class)	Class C	Class C-I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N085	C2388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http://www.hdc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HDC 뉴패러다임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BN084)	
종류(Class)	Class C	Class C-I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N085	C2388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2017.04.06	집합투자기구 최초 설정
2018.01.08	종류 수익증권 추가 (Class C-I)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HDC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대영빌딩 2층 (우:07333) Tel.02-3215-30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

####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팀운용, 2018.1.2.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홍호덕 (책임)	1964년	주식운용 본부장	35개	4,782억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13.01.~ 현재 HDC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11.03.~'12.12. 컴퍼스투자자문 주식운용본부 -'04.11.~'11.03. 아이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 -'96.06.~'03.04. 한일투신 주식운용팀
서용진 (부책임)	1963년	채권운용 본부장	321개	30,695억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06.01.~ 현재 HDC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97.01.~'05.08. 동부자산운용 채권운용 -'91.05.~'97.01. 동부증권 인수공모부

이건민 (부책임)	1979년	주식운용 2팀장	35개	4,782억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 13.09.~현 재 HDC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10.09~13.08 AK투자자문 주식운용팀 06.03~10.09 동부증권 선물운용팀, 주식운용팀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 및 일일 운용규모(2018.1.2.기준) : 12개/ 2,484억 (주식운용), 4개/600억 (채권운용)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주식운용본부장·부책임운용전문인력(채권운용본부장,주식운용2팀장)입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할수 있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펀드 코드	최초 설정일	선취 판매수수료	판매 보수	가입자격
Class C	BN085	2017.04.06	-	연 0.965%	제한 없음
Class C-I	C2388	2018.01.00	-	연 0.030%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주1) 보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1. 주식	30%이하	-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및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2. 채권	60%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b> 이어야 하며,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는 제외하고,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b>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이상</b> 이어야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집합투자증권 등	10%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6.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거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자료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
9.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0. 기타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 매수	
* 투자비율 적용 예외	위 투자대상 중 1호 내지 5호의 거래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4) 및 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동일종목증권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 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설립된 법인이 발행한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수의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에 금전을 대여 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동일회사 발행주식</p>	<p>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p>	<p>①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②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③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④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계열회사 발행주식</p>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신용등급 하락시 집합투자업자의 조치사항</p>	<p>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투자한 채권 및 어음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p>투자한도 초과</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8조6호 내지 8호 및 제19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li> <li>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li> <li>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li> <li>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li> <li>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li> </ol> <p>- 위의 "동일종목 투자제한" 규정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하지 아니한다.</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 ▶ 자산배분전략

- 채권 60% 이상 + 주식 30% 이하
- 주식부문은 펀드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시장상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입 비중 조정

## ▶ 주식운용전략

- 성장 Paradigm을 중시한 가치주 분석으로 안정적 초과 수익 달성

## &lt;전략&gt;

- 최근의 시대 환경은 새로운 필요(Needs)를 통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과정의 연속임
- 따라서 신사고와 신경제 패러다임에 초점을 둔 새로운 투자전략은 초과수익의 기회를 제공
- 현재 시장의 지배적 뉴패러다임에 속하는 4차산업혁명, 고령화, 글로벌화 등의 수혜 예상 기업군 집중 투자로 초과 수익 목표

## &lt;투자대상 분석 방식&gt;

- Top-down(성장패러다임 포착 ->뉴스,회의,filing) + Bottom-up(HDC Scoring System ->정량적, 저평가 분석) + 차별적 운용(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별화된 분석)

## &lt;투자 유망 섹터&gt;

-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 OLED, 전기차, 5G,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 고령화 : 건강, 레저, 1인가구, 자동화, 생명공학, 바이오, 도우미로봇, 게임, 소비, 편의점, 놀이문화
- 글로벌화 : 반도체, OLED,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게임

## &lt;매매원칙&gt;

- 성장 패러다임에 적합한 섹터 내에서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종목 위주 발굴, 편입
- 뉴패러다임의 주가 반영도를 고려하여 경쟁 Peer 기업대비 저평가시 보유, 고평가시 분할 매도
- 패러다임 소멸 및 밸류에이션(Per) 초과 기업에 대해 적극적 매도

## &lt;기타(+a 수익)&gt;

- 공모주, 블록딜, 실권주 등 이벤트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분석, 편입하여 +a 수익률 제고

## ▶ 채권운용전략

- 듀레이션 2년 이하의 안정적 성과목표 (신용등급 AA-이상)
- 듀레이션 전략 : 대내외 펀더멘털 분석, 통화정책 및 수급 전망, 중기적 관점 접근
- 수익률 곡선 전략 : 기준금리 대비 금리차이분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만기 비중 확대전략
- 밸류에이션 : 신용등급 상향 종목 예측,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 매수와 고평가된 종목 매도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비교지수 : KOSPI x 25% + KIS 국고채 1~2yr x 70% + Call x 5%

-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KOSPI x 25% + KIS 국고채 1~2yr x 70% + Call x 5%'를 비교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지수 선정사유 : 이 비교지수는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 및 채권과의 비교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식관련지수 25%, 채권

관련지수 70%, 유동성 지수 5%로 구성된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 주가 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
- KIS국고채** : 국내 대표적인 채권평가회사의 하나인 KIS채권평가에서 발표되는 채권지수로서,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중 잔존만기 1~2년물로 구성된 지수
- Call금리**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로서, 한국자금중개, KIDB자금중개, 서울외국환 중개에서 체결된 콜거래 가장 평균 금리

주1) 비교지수는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전략**

- 시장리스크 발생 시 대내외 환경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에 대응합니다.
-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활용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혼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 위험 및 개별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 재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금리는 경제·사회·자연현상 등의 영향을 받아 시세가 항상 변화하는 경제지표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일정 부분을 금리의 영향을 받는 채무증권 등 이자수입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 시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금리의 하락 시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상환금 등의 재투자 수익이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가 시장에서 충분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손실을 유발합니다.
집중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소수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하므로,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이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회사는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 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에 따라 급격히 가격이 변동되거나, 어 음 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 등의 원인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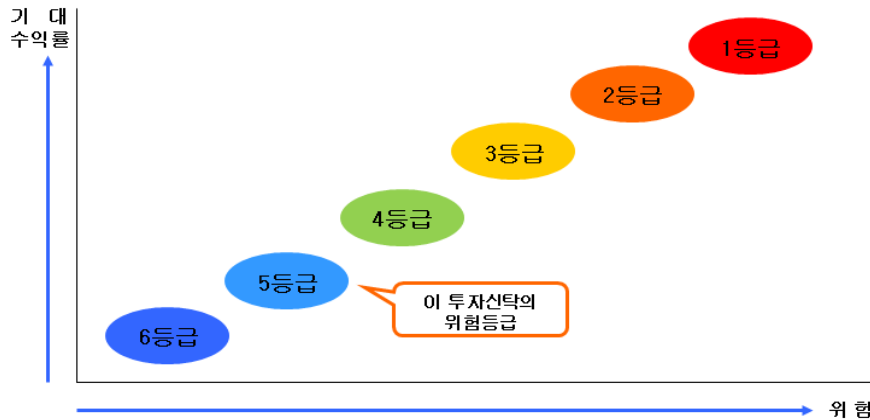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상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투자신탁은 일반 주식 매매 전략, 공모주 및 이벤트 활용 전략, 주식시장 이레 현상 활용 전략, 채권투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전략 실행 과정에는 투자신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매매 시 시장 충격 및 비용 지출, 상/하한가 제한, 거래 정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대량 환매, 빈번한 설정/해지가 있을 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투자전략이 실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펀드 결산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펀드성과에 따라 주식운용한도가 사전에 설정 되지만, 펀드 기준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주식운용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포함 3영업일(한국거래소 기준)내에 변경된 주식운용한도에 따라 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거래정지, 시장교란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사유 종료일 포함 3영업일(한국거래소 기준)로 합니다.</li> </ul>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주식, 60%이상을 채권에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6등급 중 **5등급(낮은위험)**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높은 위험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낮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채권에의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주식에의 투자를 통해 초과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로서 채권에 따른 수익의 변동성을 인지하고 주식의 가치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위험등급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설정 후 3년이 경과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b>1등급</b> 매우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2등급</b>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3등급</b> 다소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4등급</b>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5등급</b>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b>6등급</b> 매우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집합투자업자 HDC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1. Class C 수익증권 : 제한 없음
2. Class C-I 수익증권 :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구분	17시 이전	17시 경과 후
매입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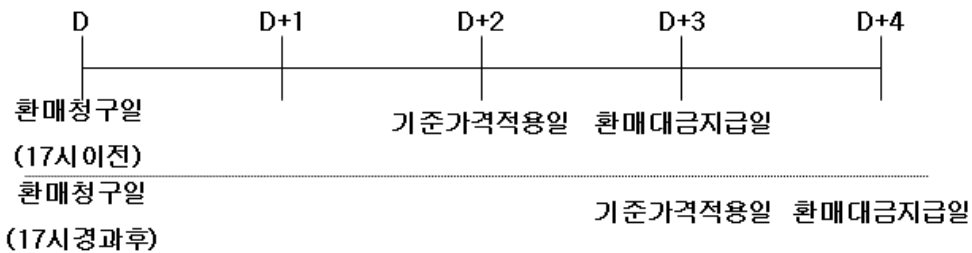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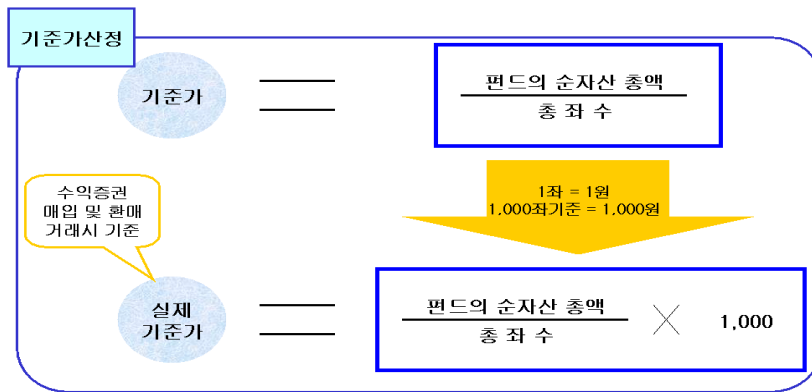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

	산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 수익증권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시하지 않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dc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국내 집합투자재산의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④	비상장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⑤	기업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⑥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Class C	Class C-I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없음	없음	환매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없음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순자산총액의 %)		지급시기
	Class C	Class C-I	
집합투자업자 보수	0.400	0.4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0.965	0.030	
신탁업자 보수	0.020	0.02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5	0.015	
기타비용	0.006	0.006	사유발생시
<b>총 보수·비용</b>	<b>1.406</b>	<b>0.471</b>	-
증권 거래비용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

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원)

종류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Class 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3,169	445,416	770,185	1,691,969
Class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8,186	151,360	264,314	595,79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27조의 규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b>환급세액</b>	<b>=</b>	<b>외국납부세액</b>	<b>X</b>	<b>환급비율</b>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이면 1, 환급비율<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외국상장주식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 해당사항 없음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해당사항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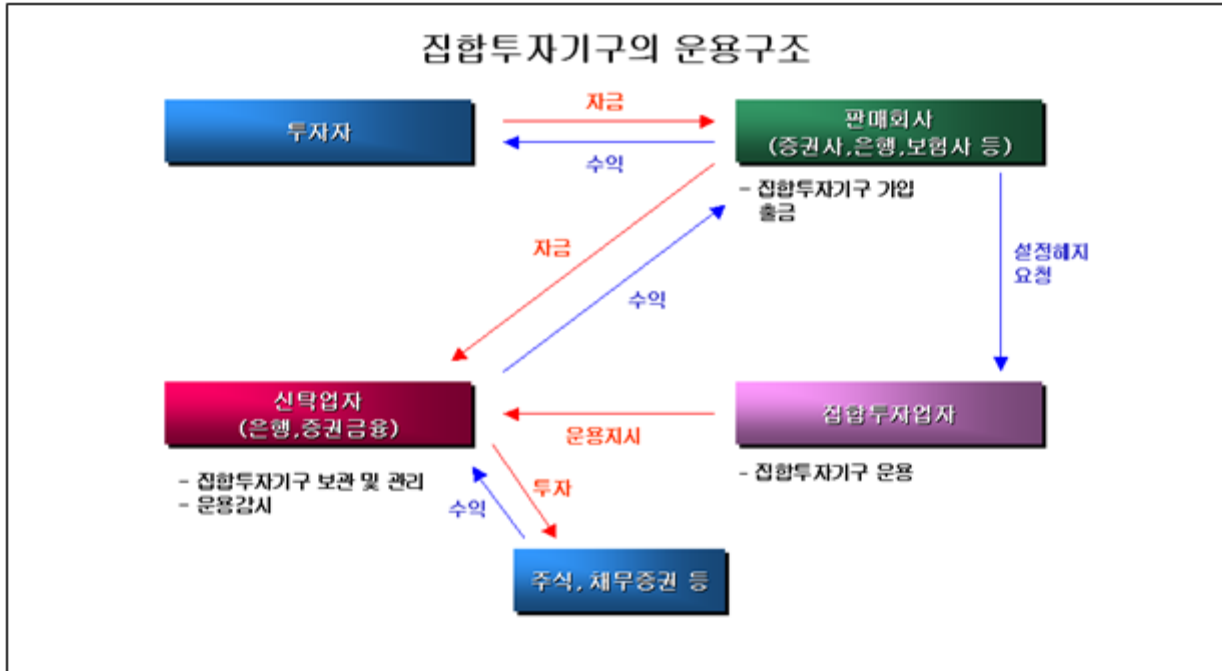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HDC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대영빌딩 2층(T. 3215-3000) www.hdcasset.com
회사 연혁	2000. 3. 9. 예비허가 신청 2000. 6. 27. 아이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0. 7. 24. 영업허가 및 수익증권 최초상품 인가 취득 2000. 8. 29.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2009. 5. 22. 본점 사무실 이전 2012. 1. 2. HDC자산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자본금	자본금 : 158억
주요주주현황	엠엔큐투자파트너스(유)(87.34%, 특수관계인 포함), 기타(12.66%)

#### 나.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업무위탁**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제17기 '16.12.31.	제16기 '15.12.31.	항 목	제17기 '16.12.31.	제16기 '15.12.31.
유동자산	19,893	19,200	영업수익	6,399	5,367
고정자산	254	1,024	영업비용	4,816	4,313
<b>자산총계</b>	<b>20,147</b>	<b>20,224</b>	<b>영업이익</b>	<b>1,583</b>	<b>1,054</b>
유동부채	409	1,314	영업외수익	-	0
고정부채	201	252	영업외비용	-	0
<b>부채총계</b>	<b>610</b>	<b>1,566</b>	<b>영업외이익</b>	<b>-</b>	<b>0</b>
자본금	15,800	15,800	법인세차감전	1,583	1,05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39	순이익		
이익잉여금	3,737	2,519	법인세비용	365	242
<b>자본총계</b>	<b>19,537</b>	<b>18,658</b>	<b>당기순이익</b>	<b>1,218</b>	<b>812</b>

## 라. 운용자산 규모

(2018. 1. 2. 기준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 산	실물	특별 자산	투자 일임	총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재간접							
수탁고	2,189	837	1,777	12,679	1,036	9,929	8,476	150	-	1,172	8,541	46,786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T.3770-8800)
회사 연혁 등	1955.10. 한국연합증권금융 1962.07. 한국증권금융(주)로 개칭 2000.08. 자본금 3,400억원으로 증자 2002.12. 신탁업무개시 2004.06.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개시

## 나.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다. 의무와 책임

- 의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b>회사명</b>	하나펀드서비스(주)
<b>주소 및 연락처</b>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T.02-6714-4600)
<b>회사 연혁 등</b>	홈페이지(www.keb.co.kr) 내 소개 참조.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
연락처	2000.05.29.	2000.06.20.	2000.06.16.	2011.06.09.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www.fnpricing.com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의무와 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 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생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집합투자규약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222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매수청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5)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1.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다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 제4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집합투자

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③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 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

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dc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 87 조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p><b>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b></p>	<p><input type="checkbox"/> <b>평가 항목</b>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사를 선정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b>선정방법</b>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당 1 회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하여 선정하며,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 Compliance, 시장정보제공능력, 매매체결능력 항목순으로 상위점수를 취득한 순서에 따라 중개사 순위를 구분 결정합니다.                      단, 준법감시팀 및 RM 제시, 부정연루 등 결격사유 발생 중개사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p>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b>설정</b>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b>해지</b>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b>투자자총회 (=수익자총회, 집합투자자총회)</b>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b>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b>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b>원천징수</b>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 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b>비교지수</b>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b>레버리지효과</b>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b>선물환거래</b>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b>금리스왑</b>	거래상대방과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b>성과보수</b>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자산유동화증권</b>	자산유동화증권이란 특정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